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Why did North Korea enact the Enterprise Act?

박 현 일**

(Park, Whon-II)

< 차 례 >

- I. 머리말
- II. 북한 기업소법의 해설
- III. 북한 기업소법의 실제 적용
- IV. 맺음말

주 제 어 : 기업소, 대안의 사업체제, 사회주의 기업관리체제, 경제적 공간, 독립채산제, enterprise, Tae'an Work System, socialist corporate management system, economic frame of referenc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I. 머리말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후 4개월 만에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12월 30일 군 최고사령관 직에 올랐고, 4월 11일 당대표자회에서 제1비서, 13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었다.)¹⁾ 이로써 북한의 3대 핵심권력인 黨·政·軍의 최고직책에 등극하

* 본고는 필자가 2012년 3월 29일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4월 27일 북한법연구회의 2012 '북한법제동향' 특별학술세미나에서 추가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였다.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법학연구소장, 법학박사.

(투고일자: 2012.04.30, 심사일자: 2012.05.21, 게재확정일자: 2012.06.13.)

였으며 김일성의 100회 생일인 15일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처음으로 대중연설을 하였다. 김정일이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3~4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보낸 후 1998년 9월에 최고직책인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것에 비하면 초스피드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주목을 요하는 점은 3대 세습을 명문화한 것이다. 김정일 탈상 100일 전에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정하고, 김정일에게 대원수 칭호를 수여하였으며,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당의 지도적 지침도 주체사상에서 김정일의 선군사상까지 포함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개정했다. 그리고 당규약에는 김정은이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고, 당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결합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라고 규정하였다.²⁾

또한 김정은의 당 최고수위 추대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³⁾ 이는 김정일의 권위(authority)를 활용해 후계체제와 관련된 갈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김정은이 권력(power)은 잡았지만, 아직은 독자적인 권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자기진술이기도 하다.⁴⁾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김정은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세계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 발사로 인하여 가중될 국제적인 제재를 극복하고 인민들에게 약속한 “더 우수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고 경제개혁을 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김정은은 김정일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했듯이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에다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예우하였다. 마치 프로스포츠 스타 선수의 등 번호를 영구 결번시키듯이 선대수령의 직함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영구히 차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충성심을 과시하고 그 권위를 물려받으려 했다.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33호, 2012.4.17, 1, 2쪽.

2) 위의 글, 2쪽.

3) 예컨대 김정은을 추대하는 결정서에서는 “제4차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밝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은 조선로동당의 강령적 지침이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2.4.12.자, 위의 글에서 재인용.

4) 김갑식, 앞의 글 3쪽.

이러한 견지에서 외신이 보도한 김정은 어록이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김정은이 자본주의적 방식 도입 논의를 용인하는 등 경제개혁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⁵⁾ 아직은 김정은이 자본주의적 방법론 도입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용인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과거 등소평이 중국의 경제개혁을 위해 그러했듯이 김정은이 “당 간부들에게 중국의 방법이든 러시아나 일본의 방법이든 활용할 만한 방식이 있다면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2010년 하반기 ‘강성대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반적인 법제정비를 할 때 새로 마련한, 본고의 분석 대상인 두 가지 법률이 김정은 체제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기존 공장·기업소 관리방식에 일대 전환을 몰고 오지 않을까, 또 하나는 북한이 드디어 국제무대로 적극 나서게 되지 않을까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2010년(주체 9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 제 1194호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하 “기업소법”)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고, 김정은 체제에서 어떠한 시행 내지 변용을 보게 될지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북한 기업소법의 해설

1. 기업소법에 대한 두 개의 관점

1) 북한의 기업소와 대안의 사업체계

북한에서 기업소란 경제단위로서의 기업(기업소법 제2조), 즉 회사를 일컫는다.

5) 마이니치 신문이 북한 노동당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김정은의 1월 28일자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경제 분야의 일꾼과 경제학자가 경제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도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 의해 ‘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을 받아 경제관리에 관한 방법론에 의견을 갖고 있어도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정은, 경제난에 다급했나... 자본주의 수단 논의 용인”, 2012.4.17.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핵심 이랄 수 있는 기업에 관한 실정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여러 모로 시사적이다.

과연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완결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기업소법을 제정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 1961년 12월 평안남도 대안군에 있는 대안전기공장을 둘러보고 내놓은 ‘大安의 사업체계’를 재확인하고 그 정신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인가?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이 1972년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선포하고 새로 제정한 사회주의헌법⁶⁾ 이래 줄곧 자리를 지켜온 북한경제의 지도이념이었다.

아니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⁷⁾ 이후 광범위하게 행하여져 온 기업소의 관리개선 활동을 반영한 것인가? 더 나아가 은밀하면서도 확실하게 대외경제개방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하여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기업법을 제정한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하게 만든다. 현재 남북경협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지만, 조만간 활기를 띠게 된다면⁸⁾ 새 기업소법에 따른 기업소 관리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경제특구에서는 남한식 기업경영이 통하겠지만 그 바깥의 북한 기업소와의 교류협력을 할 때에는 북한식 기업소의 관리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⁹⁾

-
- 6)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이 조항은 1992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33조로 자리를 옮겼고, 1998년부터는 제33조에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2009년과 2010년의 개정 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호 리용하도록 한다.”
- 7) 북한 당국은 1990년대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계획경제 시스템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자 2002년 7월 1일 물가·생활비·환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 8) 남북관계 특히 경협사업은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지만,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중단철도(TKR) 건설, 접경지역의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현안은 언제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경제연구원, “남북 경협의 경제적 가치 재발견”,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한에 있다」, 2012.3, 57면.
- 9)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의 기업관리방식이 충돌한 것 중의 하나는 근로자의 채용 문제였다. 북한에서는 기업소의 신청에 따라 노동행정기관에서 해당 기업소에 노동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지의 남한 기업들은 종업원 통솔 차원에서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쥐야 한

그러므로 최근 우리에게 입수¹⁰⁾된 북한의 기업소법은 일단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단 ‘대안의 사업체계’와 남한의 회사법 이론에 입각하여 개개의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대안의 사업체계 하의 기업소

북한에서 대안의 사업체계(Taean Work System)란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 과업을 수행하여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 체계를 말한다.¹¹⁾ 북한 당국은 1950년대 말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안의 사업체계는 종전의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업관리 형태로 부상하였다.¹²⁾

그리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기업소¹³⁾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당 비서에 의한 기업관리로 굳어졌다. 그러므로 기업관리에 있어서 경제원리보다도 정치논리가 우세할 뿐만 아니라 지배인이 아닌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공장참모부를 구성하고 참모부를 통하여 기업소의 계획, 생산조직, 기술지도 등 생산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¹⁴⁾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강조되었는데, 전자는 경제의 전반적 계획이 당과 국가의 요구대로 작성·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경제부문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세부사항까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모든 부문,

다고 요구했다. 그 결과 현지 기업들은 선발된 노력자와 노력채용계약을 맺고 있지만(개성 공업지구 로동규정 제10조) 사실상 북한측 노력알선기관에서 채용을 주관하고 있다.

10) 북한 기업소법은 2012년 1월 3일 「통일뉴스」가 처음으로 그 제정 사실을 보도하였으며, 최근 북한법연구회에서 그 전문을 입수하였다.

11) 김일성 저작집 제9권, 39쪽.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의 산업 2010」, 2010.12, 75쪽에서 재인용.

12) 정책금융공사, 위의 책, 75쪽.

13) 우리나라에서 공장은 어느 기업에 속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사업부문이자 공간을 뜻하지만, 북한에서는 기업소나 공장이나 모두 계획경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생산활동의 단위로 취급하여 공장과 기업소를 나란히 열거하는 것이 보통이다.

14) 정책금융공사, 위의 책, 75쪽.

모든 공장·기업소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관리 정책은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며 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가 무너지고 계획경제의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이완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¹⁵⁾

대안의 사업체계 하에서는 공장·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당에 의한 관리와 행정에 의한 관리로 이원화된 것이 특징이다. 당에 의한 관리는 기업소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간부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정책지도가 행해진다. 이러한 당적 지도는 해당 기업소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이자 최고 지도기구인 공장·기업소 당위원회를 통하여 수행된다. 집체적 지도기구인 당위원회는 당 비서, 지배인, 기사장과 근로단체(직업동맹, 청년동맹, 여성동맹) 책임자, 노동자대표, 기술자대표들로 구성된다. 당 비서는 당위원회의 각 부서들과 공장 안의 당 조직들, 근로단체 조직들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정치조직생활을 지도한다. 지배인은 행정경제 사업을 총괄하며 공장의 관리운영 등을 관장한다. 그러나 당위원회를 통한 집체적 지도는 실제로 공장 당위원회의 수장인 당 비서가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7.1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 운영과 관련해 공장 당위원회의 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행정조직 특히 지배인과 기사장의 영향력을 높이고, 기술인력 채용 및 임금, 상급 등 결정에 공장간부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행정간부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위원회가 지배인의 정치적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권이 당권을 초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 밖에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사법(司法) 및 근로단체조직의 활동을 통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진다. 각 공장·기업소에는 기업운영과 관련된 범죄예방 및 처리, 간첩 및 불순분자 색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장 보위부와 보안소의 파견원이 배치되어 있다. 근로단체는 당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자기 단체의 성원들에 대한 노동생활, 조직생활 등을 관리 감독한다. 7.1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 운영에서 근로단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는 근로단체 활동 참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고 시장의 활성화로 근로단체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¹⁶⁾

이와 같이 실제 생산 및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력보다 이들을 사상적으로 지도하고 감시하는 가분수적인 조직이 공장·기업소마다 만들어진 것은 대안의 사업체

15) 위의 책, 76쪽.

16) 정책금융공사, 앞의 책, 81쪽.

계가 김일성의 교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장·기업소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경제 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주체적인 경제관리 체계’임이 강조되어 왔다. 결국 계획수립과 생산, 판매, 국가납부 및 생활비(월급) 지불에 이르는 기업관리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없게 되자 전반적인 계획경제체제가 마비상태에 들어갔다.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주요 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자금만을 지원해주고 주민들과 관련된 경공업 등 여타 부문의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이나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자력갱생하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었다.¹⁷⁾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업법이 제정되었기에 그 만큼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3) 시장경제체제 하의 기업

만일 북한의 기업소가 시장경제(market economy) 체제하에서 기능하려면 어떠한 내용을 필요로 할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계약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담보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모으고 자금을 모아 공동기업을 용이하게 창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한계기업은 지체 없이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계약법, 담보법, 회사법, 도산법이 필수적이다.¹⁸⁾ 북한에도 사회주의 상업법¹⁹⁾이 있기는 하다. 다만,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상품의 공급 및 유통, 보관관리, 봉사사업(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을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하고, 기업은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생활체”라고 이해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사회주의 법체계에서는 본래 상인 계급이 살아남기 어려우므로²¹⁾ 북한의 기업소법은 제2조(기업소의 정의), 제20조(기업소의 관리일

17) 위의 책, 7쪽.

18) 박환일,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집문당, 2004, 41쪽 각주 1.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상업법. 1992.1.2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채택, 2004.6.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최종 수정보충.

20)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2, 8-10쪽.

21) 어떤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기 이전의 사실문제이기도 하다. 공산화된 국가에서는 상인과 중소기업인이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는 상거래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중한 세금으로 이들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산화된 나라마다 상인, 소

군) 등에서 보듯이 기업 중에서도 회사의 조직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²²⁾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회사와 관련된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국가가 법률로써 규율한다. 생산, 유통, 자금조달 등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사 형태의 경제단위가 발생했지만 경제주체들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 활용되던 계약이 회사 내부에서는 더 이상 주효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법으로서 회사법이 출현한 것이다.²³⁾

일반적으로 기업형태로서의 회사는 ①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② 구성원과 투자자는 개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²⁴⁾ ③ 원한다면 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고, ④ 대리인인 경영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는 특성이 있다.²⁵⁾ 따라서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갖고, 투자자들의 재산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도 회사의 자산으로만 기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별개의 사업조직으로서 사원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심리적·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법인격 단위로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하며, 시장의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도 법인격 단위로 회사를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²⁶⁾

대표적인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지만 사원의 유한책임은 어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그 사업에 할당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흡수되며 해당 사업의 재산이 커버하지 못하는 손실은 다른 사업이 보유한 재산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회사인 거래상대방의 신용과 재산을 조사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보험을 통해 위험의 발생에 대비하게 된다.²⁷⁾

기업인들은 체납세금으로 재산을 대부분 빼앗기고 말았다.

22) 중국의 경우 전통적인 國有기업과 지역단위의 鄉鎮기업, 私營기업, 外商投資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법과, 개혁개방 이후 새로 제정된 유한책임제의 회사법(公司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효백 편저, 「중국법 통론」, 경희대출판국, 2006, 239-240면.

23) 김화진, 「상법입문(제3판)」, 박영사, 2012, 161쪽.

24) 회사 형태에 따라서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도 있지만, 회사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북한법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논외로 한다.

25) 김화진, 앞의 책, 163쪽.

26) 위의 책, 165쪽.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소법이 과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transition)을 예정하고 있는지, 라진·선봉 같은 경제특구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범체계를 두고 있지만 일반 기업소에 대해서도 대외개방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에서 말한 회사법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기업소법의 주요 내용

1) 총 칙

북한의 기업소법은 총칙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기업소법의 기본”이라는 제하에 사회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여러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기업소법의 사명)는 업소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는 것을 사명(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고히 한다는 기업소의 최고가치인 ‘사회주의 기업관리체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대안의 사업체계’를 말한다. 바로 기업소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있어서 철저히 지켜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²⁸⁾ 시기 이래 경제난에 처하여 공장·기업소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시인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기업소들이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조(기업소의 정의)를 보면 “일정한 로력,²⁹⁾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라 하여 우리나라의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enterprise)을 말하며, 해당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교통운수업, 서

27) 주식회사의 경우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의 보호를 받는 사업운영의 형식은 그 자체로 효율적인 금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책, 166쪽.

28) 1980년대 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개혁·개방으로 COMECON 체제가 붕괴되자 북한은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대외결제자금이 부족하여 주요 생산설비의 가동조차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1994년 김일성이 돌연 사망한 데 이어 자연재해와 식량생산의 급감으로 아사자가 대량 속출하고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북한 당국은 이를 김일성의 항일투쟁 당시 썼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호도하고 사상적 결속을 꾀하였다.

29) 두음법칙이 없는 북한에서 로력이란 노동력 또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즈니스를 열거하고 있다. 가용자원인 생산요소는 노동력, 설비, 자재, 자금이며, 생산주체로서 만들어내는 산출물은 재화(생산활동)와 서비스(봉사활동)이다.³⁰⁾

제3조는 기업소의 조직 원칙을 기업소의 신설, 축소, 통합, 분리, 변경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기준의 수립 및 준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헌법 제119조 1항) 같은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제4조에서는 기업소의 경영원칙으로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³¹⁾의 능숙한 또는 효율적인 활용과 국가 이익에의 기여를 들고 이를 위해 각 기업소가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고의 지향점으로는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원칙 고수와 최대한의 실리추구를 내걸었다. 다시 말해서 실리를 추구하더라도 부르주아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5조(기업소의 물질기술적 토대강화 원칙) 규정은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목표를 명시한 것이다. 국가경제의 확대에 발맞춰 각 경제부문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계통적으로 기업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과, 그 물질적·기술적 기반(infrastructure)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가 기업소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경제에서나 통하는 일이므로 북한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민간자본을 동원한다든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경제개방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조(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원칙)에서는 이색적으로 기업소들이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이윤추구(profit-making)와 생존(survival)을 위해 하지 말라고 해도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경영활동의 평가기준으로는 김일성 부자의 교시를 얼마나 따르는지 평가하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향상과 제고를 들었다.

제7조(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원칙)는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애착을 갖도록 하기

30) 북한 민법에 의하면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12조 2항). 그러나 기업 내지 회사의 본질에 속하는 독립된 법인격이라든지 유한책임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31) 경제적 공간이란 북한식 용어로 원가, 가격, 수익성 등 경제적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말한다.

위한 것이라 했지만 기업소 근무의 조건으로 ‘교양교육’을 적시하고 사회주의와 애국주의를 앞세워야 함을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업소 당위원회는 언제든지 무슨 구실로든지 집체교육을 통해 종업원들의 사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제8조(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제1항의 규정은 노동당을 주체로 하여 기업소에 대한 지도는 김일성이 말한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소 사업이 개선되지 않거나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근본 담보’인 당의 지도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지도원칙이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이라고 규정하였다. 기업의 창발성(creative volunteerism)을 고양한다고 했지만 그 한계는 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 제8조까지는 국가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기업소를 지도하고 통제하는지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9조에 와서 비로소 국가가 기업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업소는 “의무 먼저 권리 나중”이라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10조(법의 적용제외대상)에서는 기업소법이 특수경제지대에(special economic zone: SEZ) 설립된 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현재 북한에는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델로 하여 만든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해 남한 기업이 진출해 있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및 최근에 중국 기업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황금평 등 특수경제지대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기업소법은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며, 특수경제지대 관련 법률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법률과는 일반법-특별법의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2) 기업소의 조직과 기관

기업소법 제2장은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 기업소의 조직에 대하여, 제3장은 제20조에서 제28조까지 기업소의 관리기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11조(기업소의 조직기관)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입각하여 기업소의 급수와 중요성, 즉 중앙기업 또는 특급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조직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중앙기업은 기계, 설비 등 생산재의 생산 및 용도가 중요한 제품,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를 가리키는데, 기업소가 소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³²⁾

특급기업소인 남포항, 남포조선소의 경우 특급시인 남포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한

다. 연합기업소는 소재한 도 당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며, 연합기업소 소속 기업소들은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와 소재하는 시, 군 당위원회의 관리를 동시에 받는다. 예를 들어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함경북도 당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나, 동 연합기업소 산하 일신탄광은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와 길주군 당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지방기업은 각 기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구역) 당위원회가 지도 통제한다.

한편 부문별 관리는 기업소가 소속된 중앙기관(성, 위원회)을 통해 관리된다. 부문별 관리는 내각의 성, 위원회별로 산하 기업소들의 생산계획 수행에 대한 관리이다. 부문별 관리대상에는 북한 경제의 중요 부문, 특수 부문들이 포함된다. 특급기업소, 연합기업소들은 해당 상급기관인 성, 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예컨대 海州항은 내각의 육해운성에 속한 항만관리국의 직접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지역별 관리는 각 기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 시, 군에 소재하는 기업소들이며 지역경제자립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지역별 관리대상에는 지역주민생활과 관련한 기업소들이 대부분 속해 있다.³²⁾

제12조는 기업소의 조직근거로서 조직이 국가적 조직에 따라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였다. 북한의 기업소 조직관리는 통제경제(command economy)의 결과라기보다 모든 기업소를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두어야 한다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개의 기업소를 당의 지배하에 두려다 보니 기업소의 급수와 중요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당 조직을 연결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이 관여하기 어려운 기업경영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배인의 행정경제사업, 기사장의 기술경제사업을 통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 심지어는 은행의 설립·운영에까지 군이 관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업소의 조직(남한의 회사설립에 해당) 신청에서부터 기업소조직기관의 심의와 등록(상업등기에 해당), 등록내용의 변경에 따른 재등록, 정리(해산, 청산에 해당), 등록증의 반납 등 행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20조에서는 기업소의 사업을 책임진 지휘성원으로서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

32) 정책금융공사, 앞의 책, 76쪽.

33) 위의 책, 76쪽.

인 같은 기업소의 관리일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북한의 기업소도 자연인과는 별개의 조직이므로 회사의 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일군이 필요한 것이다.

제21조의 지배인은 기업소를 대표하고 기업소 사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남한의 상업사용인 개념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말한다. 중국 회사법상의 총경리에 해당한다. 앞서 말한 대안의 사업체계 하에서 당 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배인이 기업소의 행정적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기업소에는 통상 수명의 부지배인을 두고 있는데, 생산, 기술에 관한 한 기사장이 기업소 종업원들을 지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지배인 유고 시의 기업소의 대표와 총괄책임은 기사장, 부지배인 등 정해진 순서로 지배인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제22조는 기사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사장이 사업정형을 지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담당 업무와 처리현황을 기업소의 대표인 지배인에게 정규적으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제23조 기업소의 자재공급, 제품판매, 노동행정, 운수, 후방경리 같은 사업을 책임지는 부지배인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물론 기업소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수명의 부지배인이 각기 자재공급, 제품판매, 운수 등의 업무와, 노동, 재정회계 등의 행정, 경리, 주택관리, 식량 및 물자공급 등의 후방업무를 담당한다. 부지배인의 상위 보고체계는 지배인이지만, 지배인 유고 시에는 기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부서)는 기업소의 경영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라는 당연한 규정이다. 그러나 기업관리가 비합리적이고 사업분담이 모호하였다면, 게다가 관리일군이 책임감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이 규정은 의미가 살아난다. 실제로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은 1990년대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자재조달이 어려워지자 공장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리하여 많은 기업소가 생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로 자금을 조달하는가 하면 종업원들을 개인 일터로 내보내고 '8.3 수입'³⁴⁾을 징수하기도 했던 것이다.

제25조의 기업소의 사업준칙이란 남한 기업의 정관 비슷한 자체규범을 말한다. 산업별로 표준화된 기업소관리규범이 있으므로 이를 기업소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종업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였다.

34) 근로자가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사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공장의 자투리 부산물 등을 구입하는 식으로 공장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제26조는 기업소의 회의운영에 관한 원칙을 정하였다. 북한 기업소의 회의체 기구는 남한 기업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각 직급별로 집체적 협의를 가져야 한다. 기업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간부회의, 참모회의, 종업원총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한다. 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이 당해 기업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므로 회의의 운영절차는 앞서 말한 사업준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북한의 기업소에는 여러 종류의 비상설위원회가 있다. 법 제27조에서는 그 예로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재정검열위원회, 설비점검검열위원회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를 당해 기업소의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기구를 과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우선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위원회 조직은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는 정 반대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도 집체적 협의를 하더라도 당의 지도를 따르라고 하였지 당 비서가 위원회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조항을 해석하자면 당의 리더십이나 국가의 지원에 자신이 없으니 기업소 별로 비상설위원회 중에서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아니면 제48조(재정관리)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시장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기업소가 제28조에 의하여 조직 기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소 조직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계획경제의 큰 틀 안에서 당해 기업소의 조직이 제 구실을 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과, 조직기관이 해당 기업소의 조직과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것, 그리고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 없는 기구변경이나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남한의 회사법 관점에서 볼 때 환경변화에 따른 회사의 변신을 가로막고, 회사의 출자자나 구성원, 종업원, 거래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반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규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3) 기업소의 운영 및 감독

(1) 경영편람적 규정의 등장

북한 기업소법은 제4장에서 무려 21개조에 걸쳐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관한 편

람(manual) 비슷한 규정을 두었다.³⁵⁾ 우리나라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강제규정이 되기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훈시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기업소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³⁶⁾ 아니면 반대로 ‘옥상옥’처럼 새로운 규제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북한의 기업소법에 기업경영의 매뉴얼이나 기술되어 있을 법한 상세한 기업경영활동의 요령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소라면 당연히 국가경제계획에 따라 경영전략을 바로 세우고 기업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공정관리, 기술관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설비관리, 자재관리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이색적인 것은 석탄을 비롯한 연료를 잘 보관하고 효과있게 이용하라는 것과 전력사용한도를 지키며 정해진 대상에만 쓰라는 것, 또 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대체로 김일성 부자가 언제 어디서나 언급하였음직한 원칙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일성 부자의 교시가 당의 정강이나 법에 우선하는 북한 체제에 비추어 이를 기업소법에 반영한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은 없다. 에너지 부족 사태와 같은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들어간 규정들이므로 이를 어겼을 때에는 엄중한 재제가 가해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규정은 제41조(기업소재산을 정해진 바대로 실사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 제44조(사회주의분배 원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것), 제48조(재정관리에 있어서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어김없이

35) 제29조(경영전략, 기업전략의 작성), 제30조(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및 실행), 제31조(생산공정관리), 제32조(과학기술발전사업), 제33조(기술재건), 제34조(기술관리), 제35조(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 제36조(품질관리), 제37조(설비관리), 제38조(동력관리), 제39조(전력리용), 제40조(자재관리), 제41조(재산실사), 제42조(제품판매), 제43조(로력관리), 제44조(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 노동보수), 제45조(노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제46조(건물, 시설물관리), 제47조(종업원생활조건외의 보장), 제48조(재정관리), 제49조(경영총화).

36) 특히 제37조(설비관리)에서 “기업소는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층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같은 대중적관리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를 언제나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 운동은 김정일이 김일성대학에 재학 중이던 1961년 4월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실습할 때 「26호 선반(기대)」의 관리·보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접 선반을 보수했다는 것을 모범의 전형으로 삼고 있다. 1982년 6월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층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으로 정식 발기됐으며, 근로자들의 기계 아끼는 마음이 결여되어 파생되는 기계설비의 수명단축과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점차 김정일의 위대한 업적으로 찬양하는 정치색을 띄게 되었다.

수행하라는 것) 등이다. 이들 조항도 1990년대 중반 이래 경제난 속에서 기업소마다 자행되었던 그 반대되는 사례를 돌이켜보면 심각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기업소에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정확히 실시하여 종업원들에게 국가 시책이 골고루 행해지도록 해야 하며, 각각의 공장·기업소에 대해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병동, 정양소, 요양소를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심지어는 종업원의 주택, 부식물공급, 땀감 등의 생활대책까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남한의 기준으로 볼 때 국가의 책무를 하위의 경제단위인 기업소에 전가하는 ‘나쁜 시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의 궁핍한 국가재정에 비추어 본다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기업 별로 독립채산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한다면 “기업 단위로 요령껏 이익을 내서 종업원들의 후생복지까지 책임지라”는 定言命令³⁷⁾이 될 것이다.

끝으로 각 기업소로 하여금 순별(10일), 월별, 분기별, 반년별, 연도별로 경영총화를 작성 보고하고, 경영성과와 문제점, 경험과 교훈을 찾아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경영활동 결과는 종업원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제49조). 이대로 한다면 각 기업소는 경영활동보다는 각종 보고 등의 잡무를 처리하느라 영일이 없을 것이다.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의 폐단인 동시에 이러한 기업경영의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는 요인³⁸⁾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기업소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기업소법 제5장은 제50조부터 기업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³⁹⁾ 대안의 사업체계를 시사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을 내세우고 내각

37) 행위 자체가 좋이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행해야 한다는 칸트식 도덕적 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독립채산제가 1998년 사회주의헌법에서 당당하게 명문화되었고, 같은 기업소법에서도 제27조에서는 비상설위원회로 두어도 된다고 한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수입을 올리고 국가예산에도 기여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8) 남한의 기업들은 기업환경(市場)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이윤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식 기업소관리방법은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39) 제50조(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 제51조(경영활동정형의 보고), 제52조(기업소의 경영활동조건 보장), 제53조(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5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을 정점으로 하여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위원회의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에 따른 지도통제의 체계를 명시한 것이다.

계획경제는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 자재공급, 재정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노동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 기업소법은 제52조에서 이러한 국가의 경영활동조건 보장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반면 기업소가 노동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경영활동과 무관한 일에 전용할 수 없게 하고 이 규정을 비롯한 기업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기관, 기업소, 책임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하였다. 형벌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법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III. 북한 기업소법의 실제 적용

1. 기업소법의 한계

북한 기업소법의 조항 별로 과거 절대적 의미를 지녔던 대안의 사업체계가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와 2002년의 경제관리개선조치, 2010년의 강성대국 준비기를 거치면서 실제 적용은 처음의 규정과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국가재정이 바닥이 나고 에너지난이 심화되면서 기업소를 국가가 설립하고 당의 집체적 지도하에 관리일꾼을 보내 경영하던 것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외화벌이 사업 등으로 자금여유가 생긴 기업소가 기업소를 만드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그럼에도 국유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급수,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직기관이 관리일꾼과 로력을 파견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對南·對中 외화벌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계층이 사적 자본을 동원하여 기업소 명의를 빌어 장마당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009년에 전격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은 이러한 사적 자본에 철퇴를 내리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북한의 공식경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북한당국이 2010년에 기업소법을 제정한 의도는

화폐개혁으로 무너진 공식경제를 추슬러 공장과 기업소를 바로 세우려는 의미가 크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국가가 의당 공급해야 할 재화와 서비스를 소규모 조직 단위로 기업소가 수행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당연시되었다.

이것이 북한 정부가 현재 봉착해 있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을 풀어 놓아야 하지만 시장화의 진전은 분권화를 수반하고 각종 탈법,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인 만큼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하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⁴⁰⁾ 다시 말해서 기업소법이 기업소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일꾼을 보낼 때까지이고,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한 기업소의 규정은 장식용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2. 대안의 사업체계의 퇴조

2010년에 제정된 북한 기업소법은 기업(회사)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한 우리 회사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견 “북한에도 기업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과시용이라는 인상을 준다. 중국의 公司法과 비교하더라도⁴¹⁾ 출자자를 유치하여 기업의 자본적 기초를 강화하고 기업경영을 효율화하려는 면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일에 대비하여 私法분야에서 남북법제의 통합을 이루기에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소법에는 사회주의헌법에도 규정된 대안의 사업체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뚜렷해 보인다.⁴²⁾ 나온 지 이미 50년이 된 기업관리기법이라면 용도폐기되는 것이 차라리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⁴³⁾ 그러

40) 4월 27일에 열린 북한법연구회의 특별학술세미나에서 필자의 주제발표에 대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가 제기한 토론의 요지이다.

41) 강효백, 앞의 책, 259-265면.

42) 유영구, “북한 ‘기업소법’에서 누락된 ‘대안의 사업체계’ -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 정밀분석(하)”, 통일뉴스 2012.3.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43) 같은 기간에 부침을 거듭했던 기업경영이론은 인간관계론, XY이론, Z이론, 시스템이론, 상황이론, 목표관리(MBO)이론, 복잡성이론, 벤치마킹이론, 6시그마 운동 등 이루 열거할

나 북한은 지난 1981년에도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공장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려고 한 바 있다.⁴⁴⁾ 당시 김 주석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임을 재천명하고, 공장당위원회는 당의 노선·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공장관리운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할 것과 당비서와 지배인은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기 자기 사업”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1961년 이래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반복하면서 당위원회가 지배인의 지휘능력을 억제하지 말고 당비서는 행정대행을 하지 말라고 역할의 구분을 강조했다. 또 당위원회가 공장의 최고 지도기관인 만큼 공장관리운영에서 결함이 나타난 데 따른 책임은 먼저 당위원회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인 김정일 당시 조직비서 역시 ‘대안의 사업체계’가 변함없는 기업소 관리운영체계임을 확인하였다. 그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경제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대중의 집체적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며 정치적 방법으로 대중을 경제과업 수행에로 힘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 뒤,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지도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이며 그것은 행정대행, 행정식 방법을 배제”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1980년대 이래 당의 ‘행정대행’ 현상과 당비서의 경제사업에 대한 ‘월권’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행해졌다.⁴⁵⁾

한 마디로 당 비서에게 앞에 나서지 말고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도 말고 당 사업만 하라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당 비서가 전면에 나서 지배인을 좌지우지하

수 없을 정도이다.

44) 본래 ‘대안의 사업체계’는 계획수립 및 실행의 방법에 있어서 생산현장의 요구와 실정을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도입 이후 생산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관리기구들 간에 일부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기업관리를 담당하는 생산계획의 담당부처가 종래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국으로 이양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계획화사업은 중앙집권화되었고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1964년에 ‘계획의 일원화’ 방침을, 1965년에는 ‘계획의 세부화’ 방침을 각각 도입하였다. 일원화는 국가계획위원회로 하여금 각 기업소에 할당할 생산계획을 일원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었고, 세부화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미세한 물품의 생산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었다. 유영구, 앞의 글.

45) 심지어는 기업소의 현실을 다룬 북한의 예술영화에서도 문화선전의 일환으로 당 비서의 모범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빈번히 강조하였다고 한다. 위의 글.

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 비서와 지배인이 서로 협력해야 기업경영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이들 간에 협력보다는 갈등·경쟁관계가 두드러졌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당의 ‘행정대행’ 현상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리더십 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다.

I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기업소법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당국의 진정한 의도라면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기업소법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포함되면 1991년 이후 김정일의 경제관리 개선에 관한 일련의 교시와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둘째로 지배인-기사장-당 비서 간의 갈등구조가 남아 있는 한 기업소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과 ‘경제적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 기업소의 경영전략·기업전략의 수립, 기업소 계획화사업의 변화 등 기업관리 개선에 제기되어온 새로운 방향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기업소에서 당 조직의 기능과 집체적 지도의 특성은 활용하되 분담된 업무의 선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기업소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1998년 사회주의헌법에서부터 신설된,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실시하도록 한 ‘독립채산제’를 기업소법에서도 강조한 나머지 대안의 사업체계를 사회주의 기업관리체계로 대체(기업소법 제1조)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예컨대 원가, 가격, 수익성을 예시한 경제적 공간에서 ‘가격(price)’을 ‘이윤(profit)’으로 슬쩍 바꿔 쓰면 어떻게 될까. 적정이윤을 낼 수 있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면 독립채산제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시장경제체제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기업소법은 집체적 토의와 결정, 실행을 따르되 당위원회의 역할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지배인책임제’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번 기업소법에서 당 간부들의 월권이나 행정대행을 용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⁴⁶⁾ 다소 성급한 결론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시장원리에 가까운⁴⁷⁾ 기업

46) 기업소법의 시행 이후 기업소의 당 간부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중앙당에 문의하는 일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내다볼 수 있다.⁴⁸⁾ 이러한 의미에서 2010년 기업소법은 시장경제체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부분적인 관측에 불과하다. 비유를 하자면 드라마의 대본이나 객석의 반응도 시장경제와 대외 개방 쪽으로 가고 있지만 번덕스러운 연출자가 대본을 무시하고 무대 위의 배우들을 지휘하려 들 때 드라마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법률보다도 노동당의 정강이 우위에 있고, 지도자의 교시가 헌법보다도 우월하다. 현재의 최고 연출자는 통치의 경험이 거의 없고 북한의 전통사회에서 ‘어린애’로 취급될 수 있는 20대의 젊은 지도자 이기에 그의 생각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법규정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지도자의 생각과 말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기업소법의 실제 적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위의 글. 이 글의 필자(유영구 전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는 북한의 경제환경 변화 및 경제관리 개선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 및 정책 전문지인 계간 「경제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읽어볼 것을 권하고 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86>>.

- 47) 북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통일외교전문가인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2003년 3월~2005년 1월)는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를 헌법에서 버렸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중국식 경제체제나 정치체제를 모방하고 답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북한에 말해야 할 개혁의 방향은 자유민주주의[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혁, 「북한은 현실이다」, 21세기북스, 2011, 33쪽, 35쪽.
- 48)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 최대의 쇼케이스는 개성공단이다. 현지에서 조업하고 있는 남한 기업들이 북한 당국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경영성과를 거두고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면 ‘21세기판 개성의 사업체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실제로 2009년 12월 남북한의 경제 관료와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중국과 베트남의 주요 공업단지와 개혁·개방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북측으로부터 상당한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 2009년 초 북측은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와 사용료, 임금 등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남측은 해외공단을 돌아보면 그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설득한 셈이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효백 편저, 「중국법 통론」, 경희대출판국, 2006.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33호, 2012.
- 김화진, 「상법입문(제3판)」, 박영사, 2012.
- 박환일,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집문당, 2004.
- 유영구, “북한 「기업소법」에서 누락된 ‘대안의 사업체계’ -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 정밀분석(하)”, 통일뉴스 2012.
<<http://www.tongilnews.com/>>.
- 이수혁, 「북한은 현실이다」, 21세기북스, 2011.
- 전우현,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상 수매사업 등의 분석 -북한 상업법상 수매사업, 사회급양사업, 유통사업 등에 대한 통일대비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3집 3호, 2010.
- 정찬형, 「상법강의 상」, 박영사, 2012.
-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의 산업 2010」, 2010.
- 장명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 2011」, 북한법연구회, 2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09.
- 현대경제연구원, “남북 경협의 경제적 가치 재발견”,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한에 있다」, 2012.
- 조선일보, “김정은, 경제난에 다급했다… 자본주의 수단 논의 용인”, 2012.
- 북한자료센터 북한법령 검색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박 환 일*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후 4개월 만에金正은이 핵심권력인 黨·政·軍의 최고 직책에 올랐다. 김정일이 1994년의 김일성 사후 3~4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보낸 후 1998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것에 비하면 젊은 지도자의 권력승계 작업은 초스피드라 할 수 있다.金正은은 김정일의 권위를 활용해 일단 권력은 잡았지만, 아직은 독자적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金正은 정책’이 서둘러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세계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하여 가중될 국제적인 제재를 극복하고 인민들에게 약속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고 경제개혁을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金正은이 자본주의적 방법론 도입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용인하였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2010년 하반기 ‘강성대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반적인 법제정비를 할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기업소법이金正은 체제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기존 공장·기업소 관리방식에 일대 전환을 몰고 오지 않을까, 또 하나는 북한이 드디어 개방의 길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기업소란 경제단위로서의 기업, 즉 회사를 일컫는다. 과연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완결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기업에 관한 실정법을 제정한 것인가? 주목할 것은 김일성이 1961년 말 평안남도의 대안전기공장을 둘러보고 내놓은 사회주의 헌법에도 포함된 ‘大安의 사업체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 과업을 수행하여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 체계’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2002년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공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법학연구소장, 법학박사.

기업소 운영과 관련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재정이 바닥이 나고 에너지난이 심화되면서 기업소를 국가가 설립하고 당의 집체적 지도하에 관리일꾼을 보내 경영하던 것이 끝난 것이다. 대신 외화벌이 사업 등으로 자금여유가 생긴 기업소가 기업소를 만드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그럼에도 국유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급수,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직기관이 관리일꾼과 로력을 파견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심지어는 대남·대중 외화벌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계층이 사적 자본을 동원해 기업소 명의를 빌어 장마당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009년 말에 전격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은 이러한 사적 자본에 철퇴를 내리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북한의 공식경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북한당국이 2010년에 기업소법을 제정한 의도는 화폐개혁으로 무너진 공식경제를 정비해 공장과 기업소를 바로 세우려는 의미가 크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국가가 의당 공급해야 할 재화와 서비스를 소규모 조직 단위로 기업소가 수행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당연시되었다. 이것이 북한 정부가 현재 봉착해 있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 기업소법을 보면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대안의 사업체제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국의 진정한 의도라면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기업소법에 대안의 사업체제가 포함되면 1991년 이후 김정일의 경제관리 개선에 관한 일련의 교시와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둘째, 지배인-기사장-당 비서 간의 갈등구조가 남아 있는 한 기업소가 기업관리 개선방안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을 수 있다. 셋째,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실시하도록 한 독립채산제를 기업소법에서 강조한 나머지 사회주의 기업관리 체계로 대체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예컨대 원가, 가격, 수익성을 예시한 경제적 공간에서 ‘가격’을 ‘이윤’으로 바꿔 쓰면 적정이윤을 낼 수 있게 가격을 책정하는 독립채산제가 곧바로 시장경제체제로 나갈 수 있다.

다소 성급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시장원리에 가까운 기업소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다볼 수 있다. 경험부족의 감독이 무리한 연출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드라마의 대본이나 객석의 반응이 시장경제와 대외 개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법률보다도 노동당의 정강이 우위에 있고 지도자의 교시가 헌법보다도 우월하므로 법 규정 여하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기업소법의 실제 적용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Why did North Korea enact the Enterprise Act?

Park, Whon-II*

In April 2012, Kim Jong-Un rose to the top three posts at the Party, Administration and the military four months after his father's death. The young leader's succession was speedy compared to that of late Kim Jong-Il who waited for three or four years after Kim Il Sung's death in 1994. Though he succeeded to seize power taking advantage of his father's authority, Kim Jong-Un does not seem to hold his own authority. To this end, it is inevitable for the young leader to rush to young Kim's policy to attract North Koreans' support. The policy measures are expected to center on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of common people and the economic reform as he promised to fulfil. The Japanese newspaper's report that Kim Jong-Un has allowed bureaucrats' discussion on the capitalistic methods to attain the goal remains to be seen.

In connection with the declaration of the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in the Milestone Year of 2012, the Pyongyang regime established and revised overall legislation in 2010, including the Enterprise Act. This Act deserves outsider's attention as a useful indicator how North Korean enterprises would be managed and operated. There have been two expectations: One is that factories and enterprises will be managed in a quite different way, and another is that North Korea's door will be eventually open to the outside world.

An enterprise is an independent economic entity, or a company in the sense of market economy. Is it true that Pyongyang is boastful of its unique socialist economic unit by establishing the Act? Is the Taeon Work System suggested by Kim Il Sung when he visited Taeon Electrical Appliance Plant in Pyongan-Namdo in December 1961 really incorporated in the Act? The Taeon System refers to a unique industrial management in which a Party committee headed by a Party secretary directed business operations to the factory manager and the chief engineer under the guidance and ideological control of the Workers' Party. The slogan has been stipulated in the 1972 Socialist Constitution and

*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and Director of Kyung Hee Institute Legal Studies.

thereafter.

However, the economic hardship and famine in the Mid-1990s and July 2002 Economic Measures caused a fundamental shift in the operation of factories and enterprises. The shortfalls of national treasure and aggravating energy shortage put an end to the Party-led factory operations. Rather financially lucrative enterprises engaged in foreign exchange revenues used to establish enterprises which are usually directed by the Party committee with less influence than before. The botched currency reform in the late 2009 aimed reportedly to curtail the privately operated funds only to fail, thus undermining the official state economy.

In this regard, the enactment of the Enterprise Act in 2010 was to bolster the basement of business operations and to reconstruct the fragile state economy. So it has been taken for granted that the enterprises care for employees by providing goods and necessities which should have been supplied by the state. It's a dilemma faced by the Pyongyang leaders.

As a matter of fact, the Enterprise Act containing declaratory provisions and manual-like clauses seems too far from the Commercial Act of the South. Also it should be noted the Act has apparently skipped the wording of the Taeon Work System. What is the implications of this intentional omission?

First, the Taeon System seems to be estranged from the instructions of Kim Jong-Il regarding necessary economic reforms. Second, the resultant conflicts among the factory manager, chief engineer and Party secretary cannot be conducive to such economic reforms. Third, the emphasis was shifted from the Taeon Work System which has been replaced by the so-called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In terms of the socialist frame of reference such as cost, price, income, etc., 'profit' in place of 'price' will inevitably lead to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and eventually to the market economy.

In conclusion, although everyone, except Pyongyang's political leaders, is anticipating the paradigm shift of the North Korean economy, only Kim Jong-Un with little experience can determine the course of the North Korea's future. So is the prospect of the new Act which is actually inferior to the Party platform and the supreme words of Kim's dynasty.